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은심
전화 052-228-4462

보도자료
2021. 1. 28.(목)

제목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중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21. 1. 27.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고발, 인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진행하였는바 각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함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 불가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이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변호인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위 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도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허위 증거제출, 허위 자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법리상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증거제출, 허위 진술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불법 고래고기 유통 재수사 사건 또한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총 8건의 기타 관련 사건을 종결 처분하였음

1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 A○○('16. 4. 울산중부서 송치 불법 고래고기 유통 사건 주임검사)
 - '16. 4. 29.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이전 압수된 고래고기 703상자 및 35바구니(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 중 기소한 150상자 제외)를 환부하여 경찰관의 불법 단속 업무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B○○(위 불법 고래고기 유통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 '16. 4. 18.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 29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C○○(위 사건 피의자)에게 '150상자만 불법'이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지시하여 고래고기 환부받음[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2 진행 경과

- '16. 4. 29. 울산지방검찰청, 압수된 고래고기 제출인 환부 처분
- '17. 9.~'20. 7. 울산지방경찰청, 주임검사 및 변호인 등 관련자 수사
- '20. 7. 울산지방경찰청, 사건 송치

3 수사 결과

가.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각 혐의없음

-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는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 구형 불가, 환부 처분 불가피함
 -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환부된 고래고기 포함하여 재압수, 유전자 분석한 결과, '16. 4. 압수 이전 '합법 유통'된 고래고기도 보관되어 있었음이 확인됨
 - '합법 유통 고래 유전자 D/B'는 '합법 유통' 고래 전체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일치' 판정되더라도 '불법 유통'으로 단정할 수 없음
 - '11. 1. 3. 위 D/B 시행 이전부터 '합법 유통' 고래도 상당량 매입, '불법'·'합법'의 구분 없이 반입·반출을 반복하였는바, '불법 유통' 고래 특정 불가
-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 없고, 경찰관이 이 사건 환부 집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

나. B○○의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각 혐의없음

- 고래류 유통증명서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도 없음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성립,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음¹⁾

※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명의인인양 가장하여 행사하더라도 불성립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자격 증명'의 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 신분의 동일성 증명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 불성립

- 고래류 유통증명서는 해양경찰서장이 혼획 등 신고자에게 발급할 뿐 해당 고래고기의 매입자들을 특정하여 작성·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사본을 소지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수사기관에의 제출을 본래의 용도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²⁾

- 변호인의 허위 증거제출, 허위 자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허위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수집·조사할 권한·의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에 비추어 법리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변호인은 의견서에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인 고래고기는 유통증명서 발급 전에 매수한 것이 대부분(즉 유통증명서와 관련 없음)"임을 명시하였고, 변호인의 접견 이전 이미 C○○이 "150상자만 불법" 취지로 자백한 바 있어 변호인의 지시로 허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등,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2)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제10조~제13조

4

기타 사건 내역³⁾

사건 요지	수사 결과
① C○○, D○○, E○○(고래고기 유통, 식당 운영) ⁴⁾ - '13. 1.~'16. 4. 6. 불법 고래고기 1,078상자 매입, 식당에서 375상자 판매, 냉동창고에 703상자, 35 바구니('16. 4. 29. 환부) 보관[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 유전자 분석한 결과 합법 고래도 존재, 과거부터 합법 고래도 상당량 매입하여 불법·합법 구분 없이 반입·반출을 반복하였는바 불법 단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② D○○(고래고기 유통, 식당 운영) - '16. 7.~8. 불법 고래 2마리 매입·판매[상동]	- '17. 11. 28. 구속 기소, '18. 4. 25. 징역 1년 선고 확정
③ F○○(고래고기 유통, 식당 운영) - '16. 7.~8, '17. 5.~6 각각 불법 고래 2마리 매입·판매 등[상동]	- '18. 3. 28. 구속 기소, '18. 4. 2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④ D○○, E○○(고래고기 유통, 식당 운영) - '17. 5.~6. 불법 고래 2마리 매입·판매 등[상동] G○○(D○○의 지인), H○○(G○○의 처) - '16. 8. D○○에게 주거지에 불법 고래 보관 냉동 창고 설치 허락[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 D○○은 확정판결(②) 이전 범행인 점, E○○는 불법 고래 매입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아들들이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점 등 고려 각 기소유예 - G○○은 구약식 , H○○는 기소유예
⑤ D○○(고래고기 유통, 식당 운영) - '05. 2.~ '16. 3. E○○ 명의 계좌에서 19억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특경(횡령)] 등	- 이체 용도 구별할 수 없고, 식당 공동 운영하며 개별 소비에 대해 묵시적 동의했다고 볼 여지 있어 혐의없음
⑥ D○○, E○○(고래고기 유통, 식당 운영) - '15. 8.~ '17. 5. 허위 계산서 2억 7,000만원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 '20. 8. 28. 불구속 기소(현재 재판 중)
⑦-1 B○○(변호사) - '16. 6.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수임료(1건, 2억원) 일부 신고누락, 6,528만원 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없음 (형식판단 우선) ※ 계좌추적 결과 신고한 금액 이상인 2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았다고 불만한 증거 없음
⑦-2 B○○(변호사) - '16. 3.~'17. 12. 사행행위법위반 등 사건 수임료 (총 12건, 합계 2억원) 일부 신고누락, 6,525만원 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없음 ※ 단순 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포탈 불성립 ※ 신고누락 분에 대하여는 추가 징수 완료
⑧ I○○(B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16. 4.~'16. 6. 수임료 중 8,150만원 소비[업무상횡령]	- 증거 없어 혐의없음

3) '16. 4. 29.자 고래고기 환부 처분 이후 관련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진행한 사건은 총 10건(검찰 형제번호 기준)으로,
- D○○, F○○에 대한 각 불법 고래 유통 사건(환부된 고래고기와는 다른 개체임, 위 ②, ③)은 '17. 11. 9., '18. 3. 13. 각 구속 송치되어 위와 같이 구속기소

- '19. 6.~'20. 8. 총 8건(검사 및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지 사건, 위 ①, ④~⑧) 송치되어, ⑥은 공소시효 임박으로 '20. 8. 28.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은 금일 위와 같이 처분함

4) D○○, E○○는 '02.부터 문제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며 D○○는 고래고기 유통하여 문제된 고래고기 식당 외에 다른 업소에도 고래고기를 판매, 구매대행 등 공급해 줌, C○○, F○○은 E○○의 아들임